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8.

발 의 자 : 김기표 · 문진석 · 강준현
이성윤 · 이학영 · 노종면
조승래 · 장경태 · 김용민
안호영 · 민홍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, 초등학교·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,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안전망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 규정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밖에 없는 실정임.

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고자 함.

또한, 조직 규모가 작아 신원 노출이 불가피한 중소 병원이나 교육 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행 규정들만으로는 신고 시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.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범죄 관련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.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그

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복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·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,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0조의2 및 제62조의2).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의 제목“(불이익조치의 금지)”를“(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의 보호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사람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2조의2의 제목“(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)”를“(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④ 아동학대범죄신고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「형법」 제307조, 제309조 또는 제3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의2(불이익조치의 금지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0조의2(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의 보호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사람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<p>제62조의2(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62조의2(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④ 아동학대범죄신고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「형법」 제307조, 제309조 또는 제3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.</p>